

#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輯者 註>……○

◎ 第 22 回 ◎

<前號에서 계속>

### 權利對 權利의 權利範圍確認審判

※ 74. 11. 8 74후 58判決(權利範圍確認審判 74抗告當 7號)

76. 4. 21 76후 14判決) // 74抗告當 7號)

無效審決이 確定되기까지는 그 效力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므로 登錄된 他人의 權利를 自己의 登錄權利의 範圍에 속한다는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職權으로 살피건대 意匠權의 權利範圍確認은 登錄된 意匠을 中心으로 어떠한 非登錄意匠이 積極적으로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確認하는 것으로 登錄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를 具體的인 事實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確定하는데 불과하고 意匠自體의 內容範圍의 確定이라는 內在的要件의 존부를 確定하는 것이 아니므로(大法院 1968. 11. 26宣告, 68후 38判決 參照). 상대방의 意匠이 登錄意匠인 경우에는 실사 그것이 請求人의 先登錄意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意匠內容이 自

己의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함은 곧 상대방의 登錄意匠權의 效力을 否定하는 結果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登錄이 意匠法의 소정 절차에 따라 無效審決이 確定되기까지는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大法院 196 9. 3. 4 宣告, 68후 56判決 및 1970. 7. 24宣告, 79 후 19判決 각 參照)

그러므로 被審判請求人의 1973. 4. 11出願 1973. 7. 4登錄 第13755—1 類似意匠이 審判請求人의 1971. 3. 30出願 1971. 8. 4登錄 第9805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는 確認을 구하는 이 事件請求는 부적합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本案에 관한 類似與否의 判決을 한 原審決은 違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76후 14) (74후 58)

職權으로 살피건대……意匠權의 權利範圍確認은……登錄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를 具體的인 事實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確定하는데 불과하고 意匠自體의 內容範圍의 確定이라는 內在的 要件의 존부를 確定하는 것이 아니므로(68후 38判決參照) 상대방의 意匠이 登錄의장인 경우에는 실사 그것이 請求人의 先登錄意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의 意匠內容이 自己의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登錄意匠權의 效力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無效審決이 確定되기까지는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할 것이다. (68후56, 70후19).

## 事實審의 專權事項

※ 80. 3. 11 79후 77判決(옷장登錄無效 78抗告當 124號)

### ◎ 判決內容

上告理由 1, 2點을 함께 본다.

被審判請求人이 主張하는 바는 모두 事實審인 原審의 專權事項에 속하는 證據取捨와 事實認定을 들어, 原審의 審決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原審이 그 審決과 같은 事實을 認定하는데서 거친 探證의 과정에서 探證法則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被審判請求人이 적법한 上告를 提起하였으나 上告장에 上告理由가 없고 또한 소정기간안에 上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上告는 모두 理由없으므로 이들 모두 기각한다.

## 抗告審決理由

公知共用된 비닐원단의 모양을 단순히 전용또는 選擇 利用하여 옷장의 表面에 表現한데 불과함.

## 法院의 判斷과 다른 경우

※ 74. 11. 6 74후 59判決(權利範圍確認審判.

74抗告 9號)

原審決의 판단취의는 本件(가)號의 문창호지는 所論意匠登錄 第13709號로된 意匠權과는 상이한 生産品이라는 것을 全體로 한 것이므로 原審決判斷에 소론기관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認定할 수 없다(本願1975. 1. 14宣告, 74후 60判決參照)

가사 소론 가치분 事件에 있어서의 判斷이 原審決 判斷內容과 다르다고 하여 그 事實만으로는 原審決이 당연히 違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原審決이 든 證據에 의하여 原審決의 所論 判斷事實을 수증못할 바 아니며, 그 認定의 과정에 違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論旨는 결국 原審決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상반된 事實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採擇될 수 없다. 論旨는 理由없다. (☞)

## ■ 아이디어뱅크 개설 안내 ■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서 汎國民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獎勵館(TEL :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